

의안번호	2203039
의 퇴 인	이재명 의원
회 답 일	2024.9.13.
추 계 번호	24B3702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1조(감독 기관)	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(이하 '중앙근로감독관'이라 한다)을 둠(제1항)	의무규정
		제106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(이하 '지방근로감독관'이라 한다)을 둘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지방근로감독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1조(감독 기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0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는 경우 해당 지방근로감독관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는

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두는 근로감독관 수 및 직급별 인원 등을 추정하여야 함

- 연간 추가재정소요_t = $\sum_{i=1}^n \sum_{j=1}^m$ (개정안에 따른 신규 채용 지방근로감독관 수_{t,i,j} × 인건비_{t,i,j})
 - i : 개정안에 따라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
 - j : 지방근로감독관의 직급
 - t : 추계연도를 말함
- 그러나 현시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의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며,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경우 직급별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개정안은 이재명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(의안번호 제220303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 - 동 개정안은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인 지방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, 노사협력,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